

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4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4. 17

(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 동 만

나. 폐지사유

-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는 '98. 9. 22일 조직개편으로 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'98. 9. 22 조직개편에 따라 시범지역 육성업무가 폐지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결의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 : 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 : “ 원안가결 ”

첨 부 :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